

## B2B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합의서

\_\_\_\_\_ (이하 “MP”라 함)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"B2B 전자결제서비스 업무지원 협약서(MP 용)" 제 8 조 1 항에 의거하여 "B2B 이용수수료"를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, 수수료는 필요시 양사간 협의에 의해 변경하기로 한다

### 1. B2B 이용수수료 요율

거래금액 (결제금액)	이용수수료 금액 ( □정액수수료 □정률수수료 )
일백만원 이하	
일천만원 이하	
오천만원 이하	
일억원 이하	
일억원초과	

### 2. 수수료의 게시 및 고지

- ① MP 는 수수료 요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..
- ② MP 는 B2B 매매계약 체결시마다 수수료금액 및 부담주체를 거래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은행과의 협의에 의해 수수료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MP 는 그 변경내용을 거래기업 등에 이메일 통지하거나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[MP]

기 업 명 : \_\_\_\_\_

대표이사 : \_\_\_\_\_(인)

주 소 :

주식회사 하나은행

\_\_\_\_\_ (인)

주 소 :